

# TaxFlash



##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이전가격문서화

재무부는 이전가격문서화(TPD)에 대한 신규 규정 No.213/PMK.03/2016 (PMK-213)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동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그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이 된다.

PMK-213은 현행 이전가격 규정을 철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PMK-213의 규정이 우선한다.

신규 규정하에서 TPD는 아래의 세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 a.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b.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c.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전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의무사항은 OECD BEPS Action 13과 일맥상통하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 요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up>1</sup> Director General of Tax Regulation No.PER-43/PJ/2010 as amended by PER-32/PJ/2011.

## Master File and Local File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 a. 전년 기준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sup>2</sup>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b. 전년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1) 물동 거래가 200억 루피아<sup>3</sup>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2) 서비스, 이자, 무형재화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각 50억 루피아<sup>4</sup>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c. 인도네시아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나 사법관할 구역에 위치한 당사자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위에 언급한 (c)항의 관련하여, 동 조건은 금액기준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상대방의 사법관할구역의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인도네시아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거래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추가로, 납세의무자가 전년도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과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은 12개월로 환산하여 상기의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 Master file required contents 통합기업보고서의 구성

통합기업보고서는 사업그룹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구조, 지배구조, 전체 법인의 국가 또는 관할구역
2. 비즈니스 활동의 유형
3. 소유한 무형자산
4. 자금조달활동 및 재무현황
5.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세무정보

이러한 카테고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하여, PMK-213은 또한 OECD BEPS Action 13의 Master file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자세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다.

### Local file required contents 개별기업보고서의 구성

개별기업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즈니스 활동의 설명 및 내용
2.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
3. 정상가격 범위의 적용
4. 재무정보
5. 비재무현황 또는 이익 수준 또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sup>2</sup> For indicative purposes only, IDR 50 billion equates to approx. USD3.7 million as at the date of writing.

<sup>3</sup> For indicative purposes only, IDR 20 billion equates to approx. USD1.5 million as at the date of writing.

<sup>4</sup> For indicative purposes only, IDR 5 billion equates to approx. USD375,000 as at the date of writing.

통합기업보고서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PMK-213은 또한 OECD BEPS Action 13의 Local file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자세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첨부서류로 포함하고 있다. PMK-213은 개별기업보고서가 사업 특성별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분(segmented)손익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데이터의 비교가능성과 품질(Quality)이 회사의 이전가격 포지션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분손익 또는 법인전체 접근방법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Timeline for the preparation of the Master and Local files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반드시 회계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이 되어야 한다.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동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서명된 statement letter가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실무적인 처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는 OECD BEPS Action 13에서 요구하는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소득세(법인세)신고서에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일부 상이하다. PMK-213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준비에 대한 연장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추가로, 인도네시아의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활용하고자 계획한 다국적 기업에 일부 시간적인 제약을 부여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납세의무자는 4개월의 제출기한을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접근과 개별기업보고서의 준용을 위하여 반드시 본사 또는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추가로, '요약'(실질적으로 신고)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동 '요약'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실질적인 체크리스트가 되며,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날짜(사용이 가능한 시점)를 신고하여야 한다.

### *Circumstances requiring submission of the Master and Local files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구*

DGT는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하기의 상황 하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a. 법규 준수 의무 감독, 일반 세무조사, 조세 범죄의 사전 증거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investigation)
- b. 이의신청 절차, 행정 패널티의 감면 또는 취소, 적합하지 아니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감면, 취소 및 개정

납세의무자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a)의 상황하에서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GT는 납세의무자의 보고서가 규정에서 지정한 TPD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DGT는 납세의무자가 TPD의 작성과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 Country-by-Country Reporting

### 국가별보고서

OECD BEPS Action 13와 같이,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회사의 자회사는 반드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비지니스 그룹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당해 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루피아<sup>5</sup>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와 동일하게,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그룹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거주국가 또는 사법관할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는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 a. 국가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b.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c.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모회사의 거주국가나 사법관할구역으로 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공유받을 수 없는 경우

### Country-by-Country Report required contents

#### 국가별보고서의 구성

국가별보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사법관할구역
2. 회사명 및 세무등록번호
3. 비지니스 활동의 유형
4. 매출액 -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매출을 구분표시(납세자의 거주국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음)
5. 세전손익
6. 소득세 납부액(현금기준) - 원천징수, 자가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7. 소득세 납부금액 - 재무제표 기준
8. 자본금
9. 누적이익잉여금
10. 정규직원의 수 (independent contractor 포함)
11.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화폐성자산 제외)

<sup>5</sup> For indicative purposes only, IDR11 trillion equates to approx. USD825 million or Euro784 million as at the date of writing.

기본 국가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bC-1 보고서 : 위에서 언급한 (4) – (11)의 국가별 정보를 포함
- CbC-2 보고서 : 국가별 비즈니스 활동의 유형을 포함
- CbC-3 보고서 : CbC-2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정보를 포함

## *Timeline*

### *제출기한*

국가별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2016년 회계연도 이후부터, 국가별보고서는 익년도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국가별보고서를 2017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DGT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Data, language and general requirements**

### **데이터, 작성언어 및 일반 요구사항**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면에 국가별보고서 당해연도 연말까지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 요구사항은 납세의무자가 준수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많은 시간차가 존재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의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DGT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존 인도네시아의 TPD실무와는 달리, 현행 규정에서 공식적인 TPD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외국어 및 외국통화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TPD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PMK-213은 납세의무자가 TPD의 작성의무가 없더라도, 동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TPD의 작성 및 준비는 납세의무자에게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 포지션의 포괄적인 지원이며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이 된다.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보다 자세한 정보와 작성 형식에 대해서는 [MoF website](#)를 참고하길 바란다.

##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Felix MacDonogh**

felix.macdonogh@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f501c21d86452d49724d02e61927c5b4\_img.jpg\) PwC Indonesia](#) [!\[\]\(81dc527a0854426c2d81f099ac1d4c56\_img.jpg\) @PwC\\_Indonesia](#) [!\[\]\(0ec02d15ae27da7d593c6f49703fef6f\_img.jpg\) @pwcindonesia](#) [!\[\]\(a44f90a97861a263bab27498db88fee6\_img.jpg\) PwC Indonesia](#) [!\[\]\(523f111258312dd390d891d1a8040d13\_img.jpg\)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mailto: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7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